
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 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선거로 규정하고 관련 적용 규정을 정비함.
 - 1) “공공단체등”, “동시이사장선거” 정의에 신용협동조합 관련 내용을 포함함(안 제3조제1호가목 및 제7호).
 - 2) 이사장선거의 선거기간을 14일로 하고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함(안 제13조제1항제1호,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).
 - 3)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에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규정함(안 제24조제3항).
 - 4)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함(안 제35조제5항).
 - 5) 축의·부의금 제공 제한 주체에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포함함(안 제36조).
-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선거일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로 연장함(안 제43조).
-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함(안 제57조).
-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산출기준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

제출하도록 함(안 제78조의2 신설).

-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등록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1명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함(안 제81조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(주서본 참고).
- 안 제78조의2제2항의 “선거관리경비”를 “제78조1)에 따른 선거관리경비”로 하고, “4월까지”를 “4월 말까지2)”로 수정함.
- 안 제81조의 제목에서 “선거운동의 제한·중지”를 “선거운동의 중지”로 하고, 본문에서 “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한다”를 “선거운동은 중지한다”로 수정함.

(전문위원 김 성 완)

1)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 제78조(선거관리경비) ① 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해당 위탁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제1호의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(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)까지,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위탁관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(의무위탁선거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)부터 1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~ ⑦ (생 략)

2) 「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」 제5조(결산보고 등) ① 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·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세입·세출결산보고서에는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